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28. 김문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 10.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12.9.)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0.)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문수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중·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사교육의 확산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 가중 및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유아 시기부터 시작된 사교육이 이후 초·중·고등학교 교육에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유아 대상 사교육 실시 및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대안반영 폐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